

## 외환거래 약정서

중국건설은행

거래처:

주 소:

위 거래처 (이하"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 (이하"은행"이라 함)은 제 1 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개별계약일 당시에 거래처와 은행이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장래의 특정 기일에 또는 장래의 특정기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 (이하"외환거래"라 함)에 적용하기로 한다.

1.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 외국통화간의 매매
3. 어느 당사자에게 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이하"옵션"이라 함)를 부여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

### 제 2 조 (관련 규정의 준수)

- ①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과 기타 모든 관련 법규를 완전하게 준수한다.
- ② 거래처는 개별 외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외환계약의 실수(實需)를 입증하기 위한 실수거래 증빙서류 혹은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 제 3 조 (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은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기타 전자수단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외환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 ② 은행은 거래처와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처의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거래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거래처가 은행에 서면으로 달리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은행은 거래담당자가 은행과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다.

#### 제 4 조 (시간외 거래 또는 장외 거래)

이 약정에 의한 외환계약은 거래처 및 은행의 영업시간에 제한 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은행의 사무실 내, 외 어디에서든 "거래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 5 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 이 약정에 따라 성립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일 다음 3영업일까지 은행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자수단을 이용하여 교환된 외환거래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은 즉시 이 외환거래의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 하기로 한다.

② 제 1 항의 확인서는 외환계약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며, 은행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환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거래처는 은행으로부터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 6 조 (약정간의 관계)

①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외환거래의 모든 조건(그리고 동 조건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추가약정 기타 이 약정서에 대한 부록(있는 경우)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는, 그러한 개별 거래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이 약정에 의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대출 등 외환거래 이외의 거래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거래처는 은행과 특약을 통해 정한 사유, 비율, 예치기간,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 제 8 조 (인도일 산정)

① 현물환인 경우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은행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이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하며, 선물환인 경우 거래일로부터 3 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외환거래의 경우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른다.

②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월 단위로 약정한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③ 거래처의 선택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개별 외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전까지 은행에 이를 통지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옵션행사일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 9 조 (은행에 의한 인도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또는 기타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은행은 당해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거래로써 개별 외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제 10 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 등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개별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 또는 옵션행사일 기타 개별 외환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지)

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조 제4항 제1호와 제6호, 제7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 및 다음의 사유 (이하 "해지사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거래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시 통지한 기한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외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래처에게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거래처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래처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2. 거래처가 다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여 동 제3자와의 관계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모든 미 결제 외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은행은 (가) "해지결제액"과 해지된 외환계약상 고객의 은행에 대한 미지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 해지된 외환계약상 은행의 고객에 대한 미지급액을 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액이 양수인 경우 고객은 은행에게 동금액을 지급하며, 환산액이 음수인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절대값을 지급한다. "해지결제액"은 (i)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해지된 외환계약상 요구되었을 해당 지급금액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은행이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은행에게 지급할 금액(음수로 표시된) 또는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양수로 표시된)으로 국내외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호가된 금액 (시장호가)과 (ii) 시장호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외환계약에 관하여 그 해지된 각 외환계약에 대한 거래의 상실(loss of bargain), 자금조달비용 또는 기타 발생 비용 등 은행의 모든 손해금액 (미지급액과 관계없이)(또는 이득, 그 경우에는 음수로 표시된)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

과를 통지한다.

### 제 12 조 (결제 등)

-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외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개별 외환계약에 관하여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거래처의 결제담당자("결제 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음)의 성명,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전화번호("수권 전화번호"라 함) (이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는 별지2기재와 같다. 거래처는 별지2에 기재한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은행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③ 거래담당자는 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면 또는 기타 전자수단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은행은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별지2에 기재된 결제담당자들 중 1인에게 결제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화로 확인한다. 은행이 그 당시의 모든 결제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담당자들로부터 결제에 관한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은행이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이 거래담당자의 결제에 관한 지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은 결제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결제의 실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개별 외환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거래처는 은행에게 거래처가 외환계약에 의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미리 합의한 고객의 계정에서 은행은 그 외환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거래처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상계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상계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 13 조 (차액결제)

거래처와 은행은 개별 외환계약에 따른 결제를 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체결한 추가약정에 의하여 차액결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 14 조 (비용 등의 부담)

- ①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미이행이나 미결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 ② 거래처는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이행 채무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다음과 같은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기준금리 + 6.0%**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기준금리 + 7.0%**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우: 기준금리 + 8.0%**

\*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 연체 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는 방식(계단 방식)을 적용함.

\*\* 기준금리는 미이행 채무금액이 i) 원화인 경우, 인도일 현재의 3개월 CD 금리, ii) 외화인 경우, 인도일 현재의 해당 통

화 3개월 LIBOR 금리를 적용함.

③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채무자")가 약정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한도 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채무는 기존 외환계약에 따른 지급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본다.

### 제15조 (약정서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이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정서를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양도금지 등)

거래처는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약정서에 따른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 17 조 (적용기간)

이 약정서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거래처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때 발효한다. 해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된다.

**제 18 조 (이행지)**

이 약정서와 개별 외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법(법률, 명령, 규칙, 포고 기타 정부행위를 포함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또는 환거래 은행 앞으로의 송금지시는 위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자금의 조달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은행의 외국소재 다른 본점 또는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언어)**

이 약정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제 20 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외국환 관련법률 및 외환거래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인)                                      거래처:                                      (인)

주소:

당사(본인)는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외환거래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등과 관련된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거래처   (인)

(별지 1)

외환업무 거래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담당외환업무	전화번호

(별지 2)

거래처의 거래담당자 및 수권전화번호

성명	부서/직책	서명/서명판/인감	수권전화번호